

# 교육급여와,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?

## 지원기준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 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·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 
(통상 기준 중위소득 50%~60% 이하)

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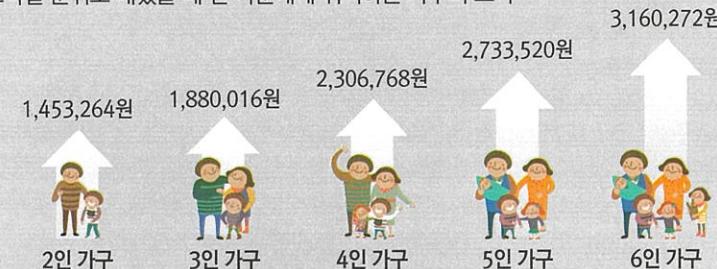
##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

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### '기준 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

### 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

소득  
인정액

$$= \text{소득평가액}^{(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(2)}$$

(1)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

(2) (각종재산\* 기본공제액 - 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

\*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

## 지원기준

### 교육급여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### 교육비

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(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


### 법정 차상위 종류

구 분	내 용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	「장애인 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	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

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"시도별 지원 기준"에 해당

③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
##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

자격 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)
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전체	전체	전체	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○	○	○	○
	법정차상위 대상자	○	○	○	일부*
소득인정액 기준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50% 이하	중위소득 52% 이하		
학교장 추천	○	○	○		

\*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